

제 466호

1974.11.1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890 호 : 서울특별시 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 3

제 891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개정조례 4

◎ 규 칙

제 1402 호 :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13

제 1403 호 :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13

제 1404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철비상수가규칙중개정규칙 16

제 1405 호 : 서울특별시주택개발사업시행규칙 20

◎ 고 시

제 16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및지적승인 23

제 167 호 : 도시계획시설 (녹지) 지적승인 23

제 168 호 :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 24

제 169 호 : 도시계획시설 (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 25

◎ 공 고

제 217 호 : 청산금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26

제 227 호 : 중기임시경사살시공고 3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228 호 : 북악터널 및 남산 1호터널 통행요금의액 및 징수기간등의 공고.....	32
제 229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점업체 다채 지정공고	33
제 230 호 : 마약취급자 면허갱신공고.....	34
제 231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에정지 지정일부 변경공고	34
제 234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35
제 236 호 : 미수검증기동목취소공고	36
제 237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38
제 238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42
◎예 규	
제 282 호 : 서울특별시수사페이징시스템운영요령.....	45
◎사 령.....	60

조 례	차 량	요 금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2 륜 차 승 용, 3 륜차 버 스, 화 물 특 수 차</p>	<p>30 원 60 원 90 원 120 원</p>										
<p>1974. 11. 11 서울특별시장 구 자춘</p> <p>◎서울특별시조례제 890 호</p> <p>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 징수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 유료도로통행요금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 및 별표 1-9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p>	<p>별표 1-9</p> <p>가. 도로 및 노선명 : 북악터널</p> <p>나. 징수구간 : 자 서대문구경향동산 6의2 지 서북구정동동산 37의1</p> <p>다. 징수기간 : 자 1971. 7. 1 지 2007. 6. 30 (37년간)</p> <p>라. 요금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차 량</th> <th>요 금</th> </tr> </thead> <tbody> <tr> <td>2 륜 차</td> <td>30 원</td> </tr> <tr> <td>승 용, 3 륜차</td> <td>60 원</td> </tr> <tr> <td>버 화 물</td> <td>100 원</td> </tr> <tr> <td>특 수 차</td> <td>120 원</td> </tr> </tbody> </table>	차 량	요 금	2 륜 차	30 원	승 용, 3 륜차	60 원	버 화 물	100 원	특 수 차	120 원
차 량	요 금											
2 륜 차	30 원											
승 용, 3 륜차	60 원											
버 화 물	100 원											
특 수 차	120 원											
<p>부 칙</p> <p>이 조례는 197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별표 1-8</p> <p>가. 도로 및 노선명 : 남산제 1호터널</p> <p>나. 징수구간 : 자 중구 예장동산 5의6 지 용산구한남동산 10의1</p> <p>다. 징수기간 : 자 1970. 7. 1 지 2010. 6. 30 (40년간)</p> <p>라. 요금액</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병원수가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1974. 11. 11</p> <p>서울특별시장 구 자춘</p>											

◎ 서울특별시조례 제 891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 병원수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 병원설치조례 제 5 조의 규정외의한 수가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수가라함은 사용료, 수수료 및 진료비를 말한다.

제 3 조 (수가) ① 병원의 수가는 별표 1 수가기준액의 범위내에서 병원장이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수가는 입원환자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징수한다. 다만, 병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입원보증서 및 보증금) ①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자는 시내에 거주하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 2 인이상이 연서한 별표 2 의 보증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원 보증금은 수가에상액의 30%

이상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병원장이 책정한다.

③전항의 보증금은 퇴원 할때에 수가와 상계할 수 있다.

제 5 조 (수가의 감면) 병원장은 전료받 받은자가 극빈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가의 납입 연기 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 6 조 (강제징수) 수가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세무기관에 의탁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7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4 년 11 월 15 일부터 시행 한다.

별표 1

수 가 기 준 표

1. 진찰 및 진단료

종 별	구 부	수 가	적 요
진 찰 료	1 회	100	6개월간 유효
보 통 진 단 서	1 부	200	
특 별 진 단 서	1 부	2,500-10,000	X-레이및검사로별도
진 강 진 단 서	1 부	300	"
신 체 검 사 료	1 회	500	"
시 체 검 안 료	1 회	1,500-2,000	"
병 사 용 진 단 서	1 부	1,000	"
환 자 소 견 서	1 부	1,500	"
감 정 서	1 토	1,000	"
시 야 검 안 료	1 회	500-1,000	"
안 저 검 사 료	1 회	100-500	"
안 안 측 정	1 회	100-500	"

다만, 동일건을 동시에 2봉이상을 발급할 때는 1봉을 초과할 때 마다 원본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검 사 료				
종 별	구 분	수	가	적 요
대 변 검 사	1 건	100 - 300		
소 변 검 사	1 건	100 - 300		
보통생화학적검사	1 건	100 - 300		
특수 "	1 건	400 - 700		
보통혈액검사	1 건	100 - 500		
특수혈액및혈청검사	1 건	400 - 700		
세균배양및내성검사	1 회	800 - 1,500		
객 담 검 사	1 회	100 - 300		
폐 기 능 검 사	1 건	1,000 - 1,500		
심 전 도	1 회	1,000 - 1,500		
위 액 검 사	1 건	500 - 800		
도 말 검 사 염 색	1 회	100 - 300		
지 능 검 사	1 회	2,000		
뇌 파 검 사	1 회	1,000 - 5,000		
3. 약 가				
종 별	구 분	시	약 대	적 요
내복약 (산 제)	1 일부	80		
내복약 (수 제)	1 일부	80		
든 복 약	1 회	80		
의 용 약	1 제부	100		
다만, 고가약(주사약포함)을 사용할때는 별도 가산 징수한다.				

4. 수 술 료							
종	별	구	부	수	가	적	요
소	수	1	회	2,000-6,000			
중	수	1	회	6,000-20,000			
대	수	1	회	20,000 이상			
의	내	1	회	1,000-3,000			
정	상	1	회	3,000-5,000			
이	상	1	회	5,000-15,000			
5. 주사 수수료							
종	별	구	부	수	가	적	요
피	하	1	회	100			
정	맥	1	회	150			
림	정	1	회	300			
수	혈	1	회	600			
관	절	1	회	600			
6. 처 치 료							
종	별	구	부	수	가	적	요
일	반	1	회	200 - 500			
정	형	1	회	2,000			
"	기	1	회	3,000-5,000			
"	"	1	회	5,000-10,000			
"	"	1	회	10,000 이상			
화	상	1	회	2,000-6,000			

종 별	구 류	수 가	적 요
화상처 치료 (중등증)	1 회	6,000-10,000	
" (중 등)	1 회	10,000 이상	
피부과 처 치료	1 회	200-500	
안이비인후과 처 치료	1 회	200-500	
부인 과 처 치료	1 회	300-1,000	
녹막, 부막천 자료	1 회	1,000-1,500	
요척수천 자료	1 회	1,000-1,500	
이화학적 치료	1 회	500-1,500	
위담장세척료	1 회	1,000-1,500	
관장료 비누관장	1 회	300-1,000	
" 구리세린관장	1 회	300-1,000	
" S. S 관장	1 회	500	
" 가스관장	1 회	500	
전기충격요법	1 회	1,000-2,000	
약물벌룬충격요법	1 회	1,500-3,000	
아미탈면담	1 회	1,000-2,000	
정신요법	1 회	1,000	
고압산소치료	1 시간	시 가	
산소 흡입	1 "	300	
증기 흡입	1 "	200	

다만, 특수처치일시는 본 기본요구에 그 실비를 가산 정수한다.

7. 벤프견문			
종 별	구 부	수 가	적 요
홍 부 촬영	1 회 14×17	1,200	
"	1 회 11×14	1,000	
"	1 회 10×12	800	
두 부 촬영	1 회	1,000	
유 양 들 기 촬영	1 회	1,000	
취 추 촬영	1 회	1,200	
식 도 조 영 촬영	1 회	2,500-5,000	
자 궁 조 영 촬영	1 회	2,500-5,000	
담 낭 촬영	1 회	3,000-5,000	
상 부 위 장 조 영 촬영	1 회	2,500-5,000	
대 장 촬영	1 회	3,000-5,000	
신 우 조 영 촬영	1 회	3,000-5,000	
치 과 촬영	1 회	300	
취 추 조 영 촬영	1 회	3,000-5,000	
기 관 지 조 영 촬영	1 회	3,000-5,000	
무 시	1 회	1,000	
간 집 촬영	1 회	500	
단 총 촬영	1 회	2,000-5,000	

8. 입원료			
종 별	구 분	수 가	적 요
1 등	1 일	2,500	식 사 포 함
2 등	"	1,500	"
3 등	"	1,000	"
9. 초과수수로 및 처치료			
종 별	구 분	수 가	적 요
처 치료	1 회	200-500	
유치발치료	1 회	300-500	
특수발치료	1 회	1,000이상	
영구치발치료	1 회	500-1,000	
보목수술	1 회	1,000-3,000	
특수수술	1 회	3,000 이상	
충전아말감	1 와	500-1,000	
충전아답릭	1 와	1,000	
교 정	1 회	2,000-10,000	
보 격 장치	1 회	2,000-5,000	
배간상층의치및국부위치	1 약	3,000 이상	
치삭 제거	1 회	2,000-3,000	
인상료 편측	1 상	300	
" 일약	1 상	500	
" 전약	1 상	1,000	
다만, 귀금속은 가격변동에 따라 그 수가설비에 5%를 가산 징수한다.			

10. 마취료		
항 목	수 가	적 요
1. 전달마취및 신경절전달술		
가. 상박신경봉전달마취	1,000 ~ 3,000	
나. 피 부 마 취	1,000 ~ 3,000	
다. 신경절 마취	1,000 ~ 3,000	
2. 척 수 마 취	2,000 ~ 5,000	
3. 직장마취 (단독)	2,000 ~ 5,000	
4. 정맥마취 (단독)	2,000 ~ 5,000	
5. 흡 입 마 취	3,000 이상 (시 간 당)	
<p>다만, 마취에 필요한 약제 및 기타 재료는 별도로 그 실비만을 가산 징수한다.</p>		

규 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서울특별시규칙제 1402 호

서울특별시인사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 17 조 제 1 항중 「구청장」 다음에
「(구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삽입하고, 동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4급」을 각각 「3
급」로 하며, 제 2 항 제 3 호중
「5급」을 「4급이하」로 한다.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 나무중
「4급」을 「3급」로 하고,
동항 제 2 호 다목중 「5급」을

「4급이하」로 하며, 제 2 항 제 2
호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을 삭제한다.

나. 5급공무원 및 기능직의 신
규임용과 시보해제

제 52 조 제 1 항중 「다만」 다음에
「3급을류공무원의 구 및 구출장
소의 보직발령을 제외한」을 삽입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서울특별시규칙제 1403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0조 제 2항 제 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자동차정비장 지도감독

제 68조 제 1항중 "운수행정계, 운수운영계와 운수지도계"를 "운수행정계와 운수운영계"로 하고 제 2항 제 1호중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 3호를 삭제한다.

바. 경유소의 조정

제 69조 제 1항중 "운수 1계, 운수 2계와 운수 3계"를 "운수 1계와 운수 2계"로 하고 제 2항 제 1호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 3호를 삭제한다.

라. 택시 승차대의 관리

제 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0조 (운수 3과) ①운수 3과에 안전계, 정비계, 지도 1계와 지도 2

계를 두고 안전계장, 지도 1계장, 지도 2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비계장은 기계기좌 또는 지방기계기좌로 보한다.

②운수 3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계

가. 자동차등록에 관한 계획 및 조정

나. 검사에 관한 계획 및 기술상의 지도감독

다. 보안기준 및 구조기준에 관한 사항

라. 검사장의 지도감독

마. 자동차등록번호표 제작소의 지도감독

바. 중고자동차의 매매업소 지도감독

사. 배연차량의 단속

아. 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자. 각자 재타각 및 제사용에

<p>관한 사항</p> <p>차. 과내 다른지의 주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정비 제</p> <p>가. 차량정비사업의 계획 및 조정</p> <p>나. 차량정비에 관한 기술상의 지도 감독</p> <p>다. 자동차정비사업체의 인, 허가 및 지도감독</p> <p>라. 자동차 정비사의 자격시험</p> <p>마. 자동차정비사 양성학원의 지정 및 지도감독</p> <p>바. 정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p> <p>사.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기록부의 관리</p> <p>아. 정비사업진흥회의 지도감독</p> <p>3. 지도 1 제</p> <p>가. 노선업종 자동차 운송사업체</p>	<p>중사원의 취업관리 및 교양, 훈련과 표창</p> <p>나. 노선업종 차량의 운행지도 감독 및 서비스 개선</p> <p>다. 노선업종 범령위반 차량의 행정처분</p> <p>라. 교통민원 신고센터의 종합관리 및 운영</p> <p>마. 노선업종 자동차의 운행증 및 보험에 관한 사항</p> <p>4. 지도 2 제</p> <p>가. 구역업종 자동차 운송사업체 중사원의 취업관리 및 교양훈련과 표창</p> <p>나. 구역업종 차량의 운행지도 단속과 범령위반차량의 행정처분</p> <p>다. 차량의 서비스 개선 및 교통민원신고의 처리</p>
--	---

부 칙

이 규칙은 1974년 11월 2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자동차 정비장수가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서울특별시규칙제 1404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장수가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자동차정비장수가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수리의뢰) ①자동차의 수리를 서울특별시 자동차정비장장 (이하 "장장"이라 한다)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자동차 관리부서에서는 별지제 1호 서식에 의

한 수리의뢰서를 자동차의 입고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리의뢰시에는 수리비 지출에 따른 경리관의 예산증명과 지출원의 지출보장이 있어야 한다.

제 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조 (수리비의 납부) 장장으로 부터 수리비의 농보를 받은 자동차 관리부서에서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제 1호 서식 및 별지제 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제 5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1147

납부고지서 및
납입필용지서 (정)

계		호	년도
납	입	의	인분
		(차량번호)	
운수사업특별회계수입			
일금		원정	
₩ _____			
위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일내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일: 197 년 월 일			
197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서울특별시운수사업특별회계 자동차정비장분임수입원 (인)		
	귀하		

(정비장) (붙임기관보관용)

영 수 증 서

계		호	년도
납	입	의	인분
		(차량번호)	
운수사업특별회계수입			
일금		원정	
₩ _____			
위 금액을 영수함.			
197			
수납일부인	서울특별시금고 취급자인		

(정비장) (붙임기관보관용)

제 466 호 시 보 1974.11.11 65-19

서울특별시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197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405 호

서울특별시주택개발재개발
사업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주택개발재개발사업시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재산평가기준)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전후 토지가액의 평가는 부동산등록세 과세가 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감정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제 3 조 (저속건물의 범위) 조례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저속되는 무허가건물이라 함은 주거용 무허가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공시설에 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 4 조 (환지지정순위) ①조례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물 교부하는 경우 도로에 접한 종전토지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보통지 : 토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
2. 각 지 : 토지의 2면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

②각지의 환지는 종전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에 포함된 것으로부터 순위가 정하여지나 종전토지가 근소하여 환지면적이 파소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전항의 각지물 제외된 토지의 환지는 도로중심점에 접한 토지의 순위로 정한다.

제 5 조 (환지면적의 산출) ①조례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환지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환지면적} = (\text{종전토지면적} + \text{가산면적}) - (\text{공통부담면적} + \text{수면도부담면적})$$

②전항의 가산면적은 종전의 토지가 시설된 증로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였을 경우 그 접한면의 길이에 도로 평균폭의 1/2을 승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가산면적은 종전토지면적의 2할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 1항의 공동부담면적은 사업비등 증당할 채비지의 총면적과 공공용지의 면적(부담면적을 제외한다)을 종전토지의 총면적으로 제한함에 종전의 토지각필을 승한 면적으로 한다

④ 제 1항의 연도부담면적은 정리후 도로로 될 토지를 부담하는 면적으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예산한다.

1. 보통지의 환지는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별표 1에 의한 편측 부담폭원을 승한 면적으로 한다.
2. 각지는 전항에 의한 면적에 별표 2에 의한 측면도로 부담폭원을

승한면적으로 한다.
제 6 조 (부담면적의 경감 또는 면적)

① 전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부담면적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1. 사업지구계에 접한 종전의 토지가 지구의 도로에 접하였을 때에는 공동부담만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 184 조에 해당되는 공공시설로서 계속 사용목적의 변동이 없는 토지는 부담을 면제한다.
3. 환지안기장이 기준미달인 경우에는 감보를 계산서에 의한 노폭의 금지 최대감보율치로 부담한다.

② 전항 각호이외에 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

전면도로연도부담폭원표

전면도로폭원 편측 부담폭원	40	35	30	25	20	12	10	8	6	4	3
	12.6	11.3	10	8.7	7.4	5	4.5	4	3	2	1.5

<별표 2>

측면도로연도부담폭원표

측면도로폭원 측면도로 부담폭원표	40	35	30	25	20	12	10	8	6	4	3	비고
	4,201	3,757	3,333	2,900	2,467	1,667	1,472	1,383	1,000	0.667	0.504	

<별지 3 >

토 지 분 양 계 획 기 준

점 유 면 적 구 분	분 양 기 준
1 - 27명 미만	4 가구 × 12.5 평 = 50.0 평 6 " × 12.5 " = 75 " " 8 " × 12.5 " = 100 " " 10 " × 12.5 " = 125 " "
27 - 35 "	4 " × 17 " = 68 " " 6 " × 17 " = 102 " " 8 " × 17 " = 136 " "
35 - 43 "	4 " × 21 " = 84 " " 6 " × 21 " = 126 " "
43 - 50 "	2 " × 25 " = 50 " " 4 " × 25 " = 100 " " 6 " × 25 " = 150 " "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6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변경
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50 호 (73.5.20)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하

가. 노선 변경 조서

구분	상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6	240	동작동 64 번지	동작동 59-2	개설현황에 맞추
변경	"	"	"	"	"	"	"	어 변경(새마을
폐지	"	"	"	"	280	동작동산 18	동작동산 7	사업도로)

※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악구청에 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167 호

도시계획시설(녹지)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234 호 (74.9.28) 로 시설 일부변경결정된 당시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

있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따라 이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11.4

서울특별시청

4)에 의하여 이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11.4

서울특별시청

가. 도시계획녹지시설 지적승인조서				단위 : m ²
시 설 명	위 치	확 정	비 고	
공군사관학교주변녹지	관악구신대방동일부지역	136,672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엔 보관.				
◎ 서울특별 시고시 제 168 호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양서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 건설부고시 제 116 호 (73.3.31) 로 일부변경 결정고시된 준공업지역 (영등포구 등촌동, 염창동, 가양동) 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첨부 : 1.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 조서 (도면표시와 같음) 2. 지적고시도면 (도면생략)		
		1974. 11 . 9		
		서울특별시 장		
가. 서울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조서				단위 : m ²
용도지역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준공업지역	영등포구 등촌동, 염창동, 가양동 일부지역	2,523,000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 서울특별시고시제 169 호

도시계획시설(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 도시계획시설(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던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23 호 (73.4.4)에 의하여 이를 고

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11. 9

서울특별시장

가. 구의수원지 수도용지 시설확장조서 (추가)

단위 : m²

시설명	구분	위치	기정면적	추가면적	총정면적
수도	추가	성동구 구의동 160-1 의 4 필지	145,800	3,851	149,651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나. 번동 수도용지 시설확정조서

단위 : m²

시설명	구분	위치	확정면적
수도	신설	도봉구 미아동산 19-1 의 4 필지	16,708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17 호

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

청산금 납입고지서를 각 납입의무자에게 발송한바 있으나 수명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직접 송달이 되지않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8 조제 3 항 및 지방세법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 주소 또는 거주성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잠원동 135-35 이 협 이 의 107 명
2. 구분청산금납입고지서 74 년도수기분 가. 납부장소 :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행정과 나. 납부기간 : 74.11.7 까지

1974.10.

서울특별시장

영동지구공시송달자명부

수납 번호	물 건 지			과도명	청 산 금 체 납 액	납 부 자	
	동	지 번	평수			주 소	성 명
5	잠 원	135 - 35			16,935	잠원 135-35	이 협 이
13	반 포	257 - 4			23,068	고양군용강면현색리 139	김 동 혁
14	신 사	414 - 4			98,182	한남동 360	이 주 향
17	잠 원	310 - 11			12,366	잠원 310-11	유 상 흥
24	"	29 - 35			33,155		
26	"	90 - 13			33,155	잠원 90-13	신 화 운
28	"	90 - 5			33,155		
30	"	132 - 2			200,533	인현동 365-2	안 영 태
31	"	132 - 4			11,880	필동 3 가 62	길 정 기

수납 번호	물 건 지			과도평	청 산 금 채 납 액	남 부 자	
	동	지 번	평 수			주 소	성 명
33	잠 원	132 - 7			35,235	신당동 304-139	이 영 희
52	"	90 - 15			1,199		
56	"	90 - 37			66,546	잠원동 90-37	정 무 영
57	"	90 - 38			30,410	잠원동 90-37	정 무 영
58	"	90 - 41			35,172	잠원동 1	최 순 화
60	"	90 - 43			3,606	반포동 539	김 동 오
70	"	90 - 74			36,545	잠원동 137	이 기 만
80	"	86 - 2			350,534		
84	"	134 - 89			91,303	계기동 558	이 오 동
39	"	134 - 7			17,867	"	"
116	"	90 - 30			64,701		
118	"	90 - 20			36,409	잠원동 137	김 삼 연
119	"	90 - 21			36,409	" 90-21	권 영 자
126	"	90 - 69			63,202	신계동 11-8	심 병 십
139	"	137 - 90			154,472	잠원동 8-1	김 상 오
141	"	137 - 84			75,160	" 1-84	김 진 호
146	"	1 - 97			92,845	석관동 373-105	황 정 주
147	"	1 - 102			252,008	잠원동 1-102	백 여 원
157	"	1 - 154			92,845		지 용 규
159	"	137 - 86			42,194	잠원 137-86	현 남 문
162	"	137 - 93			240,955	잠원 93	경 봉 희
166	"	273 - 39			104,640	반포동 274	김 한 중
167	"	1 - 51			110,191	연의동 101-1	김 경 안
168	"	3 - 1			55,739	장위동 74-120	양 민 남
169	"	1 - 23			66,085		

수납 번호	물 전 지			과도명	청 산 금 제 납 액	남 부 자	
	동	지 번	평 수			주 소	성 명
172	신 사	410 - 22			53,661	용산 3가 1-1	김 진 우
184	반 포	170 - 6			351,345	반포 50	윤 수 천
185	신 사	407 - 6			23,099	금호동 1가 1532	이 지 형
186	"	351 - 2			196,779		
188	압구정	358 - 3			206,429	인천시 북구 산 목 1동 179-2	박 기 수
191	잠 원	1 - 116			387,670	잠원 1-116	이 법 태
193	신 사	405 - 3			66,114	미아 산 108	배 재 문
202	"	410 - 54			60,104	신사동산 410-8	이 용 범
204	"	410 - 27			163,783	압구정 274-22	김 운 숙
212	"	410 - 46			55,596	신사 410-46	허 익 수
220	"	56 - 2			3,516	" 413	유 근 모
225	"	56 - 7			3,516	" 415	서 춘 자
237	"	56 - 21			12,306	" 56-21	정 순 만
239	"	56 - 23			12,306	신사 3가 90	이 경 희
240	"	56 - 24			12,306	"	"
251	반 포	60 - 5,6			220,409	논현동 211-8	강 만 옥
266	"	산 2 - 4			147,142	동소문동 4가 122-2	최 용 운
268	논 현	77 - 7			204,119	미아동 734-47	김 진 수
268	"	191 - 1			343,519	대구시동구과동120	양 성 근
271	반 포	63 - 3			408,145	논현동 56	박 달 선
272	"	65 - 2			18,016	반포동 60	김 명 숙
275	논 현	125 - 1			301,727	하왕십리 482	최 수 선
277	반 포	24			48,547	이문동 319-34	이 덕 선
280	"	36 - 7			532,981	한강로 1가 13	김 형 기
293	신 사	343 - 4			64,244	종암동 79-383	정 기 배
294	"	342 - 2			126,904	미아동 732-16	이 교 춘

수납 번호	물 건 지			과도평	청 산 금 책 납 액	납 부 자	
	동	지 번	평수			주 소	성 명
296	잠 원	62 - 5			125,523	상도1동117-4	이 병 창
303	"	19 - 6			300,566	청파동1가12-2	최 경 학
303	"	19 - 4			161,382	"	"
304	"	19 - 7			114,829	"	"
306	"	20 - 4			87,919	잠원60	김 포 남
307	"	64 - 4			26,124	영동포425	김 종 현
311	"	26			70,351	상수동90-6	김 용 식
311	"	27 - 1			16,164	"	"
313	"	42 - 3			124,758		
314	신 사	452 - 25			68,999		송 순 갑
316	잠 원	34 - 6			73,733	잠원촌31	김 영 택
316	"	39 - 1			33,272	여수시교동381	홍 봉 회
317	"	39 - 2			199,134	상도1동105-10	박 송 재
320	신 사	430 - 12			24,440	불광16-69	홍 우 섭
322	잠 원	429 - 15			146,890		
324	"	5 - 3			104,832		
326	신 사	429 - 1			79,164	인현동189-2	남 권 길
327	잠 원	3 - 3			28,365	잠원동41-2	조 윤 호
330	신 사	산 58			40,192	신사동67-17	정 두 복
337	"	산 62			120,331	한남동723-5	리 명 숙
338	"	251 - 2			324,075	후암동30-23	이 규 선
343	"	137 - 4			276,875	대방동443-3	유 한 양
344	반 포	158 - 2			24,547	양재동9-2	김 진 수
344	"	119 - 3			1,835,636	방배동453	유 종 성
345	"	146 - 6			249,117	한강로2가64	이 경 호

수납 번호	물 건 지			과도평	취 산 금 제 남 액	남 부 자	
	동	지 번	평 수			주 소	성 명
353	반 포	368 - 1			112,662	창원동 99-43	신 호 숙
357	압구정	295 - 2			286,368	계기동 120-194	이 항 순
362	"	232 - 3.2			62,144	돈암동 538-94	손 영 숙
367	"	271 - 2			170,977	보광동 256-346	김 차 투
374	"	182 - 3			104,363		국 세 청
377	"	188 - 29			28,060	압구정 188-29	강 현 구
378	"	224 - 5			135,878	하월곡 34-51	서 원 백
380	"	44 - 3			258,491		이 기 성
386	학 동	168			49,406		
387	신 사	14			103,716	오장동 127-2	장 정 낙
390	"	136 - 3			245,805	신사동 136	유 도 원
390	"	136 - 4			227,949		
402	"	186 - 2			159,667	신당동 366-237	주 방 윤
409	"	210			119,156		
410	"	211			526,059		이 광 선
414	"	222			380,306		
423	"	237			418,843	중곡동 150-91	이 중 훈
426	학 동	산 485-1			47,576	용봉동 57	이 규 학
427	"	77			217,880	학동 129	김 석 권
429	논 현	235 - 7			466,727		국 세 청
434	학 동	129 - 12			463,661	학동 129	신 경 인
436	"	산 19 - 3			227,619	압구정동 245	라 석 혜
438	논 현	50 - 4			305,633	신림동 162	김 중 태
439	"	50 - 5			65,211	미아동 700-34	송 삼 용
441	"	158			210,484	염리동 41-99	임 태 영

◎서울특별시공고제 227 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74.11. 6

서울특별시장

중기임시검사실사공고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다음의 중기 소유자는 중기관리법제 12 조와 중기 검사규정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기 임시검사를 수검토록 농규정제 10 조 제 2 항

1. 검사구분 : 임시검사
2. 검사기간 : 74.11.12 ~ 74.11.30
3. 검사장소 : 현제 중기사용지물 관할하는 중기검사관청

4. 검사대상중기등록번호

서울자(중)	서울자(중)	서울자(중)	서울자(중)	서울자(중)
3437	3439	3442	3431	3422
3423	3456	3449	3415	3435
3436	3414	3452	3445	3446
222	224	228	230	671
672	675	676	678	2316
3331	3767	3769	3589	1111
1110	3768	3766	3765	3763
3770	1995	1986	1994	2000
2003	2004	2008	1977	1978
1982	1478	1963	1559	1956
1958	1498	1499	1675	2033
2027	2026	2036	2019	1980
4459	1597	1589	1574	1976
4462	4463	4513	4660	4525
4503	4460	1500	4523	4664

서울자(중)	서울자(중)	서울자(중)	서울자(중)	서울자(중)
4515	1925	1591	1468	1501
1592	4531	1601	1663	1590
2204	2203	2205	2480	2481
1707	3188	3463	1824	1822
1826	1828	2528	2075	2073
2065	2121	2115	2113	2109
2107	2094	2090	2095	2068
2112	2118	2088	2087	2085
2077	2076	445	2071	4357
4405	442	5472	5471	5525
5526	662	727	1995	499(이상 130대)

◎ 서울특별시 공고제 228 호

북악터널 및 남산 1호터널 통
행요금의액 및 징수기간등의공고

북악터널과 남산 1호터널의 관리권
을 1974.11.1부터 양도받음에 따

라 동통행요금의 액 및 징수기간등
을 유토도로법 제 10 조 및 동시행
령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74.11.1

서울특별시장

1. 통행료의 징수자 : 서울특별시장

2.

명 칭	구 간	징수기간	징수대상 및 금액
북악터널	자 서대문구 평창동 산 6 의 2 지 성북구 정릉동 산 87 의 1	자 1971.7. 1 지 2007.6.30	승용차: 60 원 버 스: 100 원 화물차: 100 원 복수차: 120 원 이륜차: 30 원

명 칭	구 간	정 수 기 간	정 수 대 상 및 금 액
남산제호 터널	자 중구예장동산 5-6 지 용산구한남동 산 10-1	차 1970.7. 1 지 2010.6.30	승용차: 60 원 상용차: 60 원 이륜차: 30 원 버 스: 90 원 화물차: 90 원 특수차: 120 원

3. 통행료의 면제차량 또는 통행인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
법원장, 국민으로서 외국사절과
그 경호용차량
나. 검찰, 경찰 및 기타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공하는 차량
다. 교통단속용차량
라. 수방기관에서 수방을 위해 출
동에 사용하는 차량
마. 체신편서에서 우편 및 공중전
기통신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4. 통행료 징수방법
통행차량에 대하여 통행권의 발급
과 동시에 통행료를 징수함.

◎ 서울특별시공고제 229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대체지정공고

당시 지정수출품생산 지정업체중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변경된 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
정 및 자금지원요령제 7 조의 규정예
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체 지정 공
고한다.

1974.11. 4
서울특별시 장

다 음

1. 대체지정업체

지 정 취 소					대 체 지 정				
지정 번호	기업체명	소재자	대표자	수출품명	지정 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명
918	한국상역 공사	영등포구오 류동77	장경환	제 털 이 식 기 류	918	한국상역 기업주식 회사	영등포구오류 동77	장경환	제 털 이 식 기 류 유기제품
714	금강디자 인센타	마포구서교 동374-10	김중일	제 도 디 자 인	714	주식회사 금강디자 인센타	마포구서교동 374-10	김중일	제 도 디 자 인

◎서울특별시공고제 230 호

마약취급자면허갱신공고

마약취급 면허소지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마약법 제 9 조 및 동법시행세칙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자 면허갱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974. 11.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1. 신청접수기간 : 1974. 11. 1 - 1974.

11. 30 (1 개월간)

2. 구 비 서 류

가. 마약취급자 면허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2 부 (보건예방과 및 각 구보건소에서 무료배부함)

나. 마약취급자 면허증원본 1 부

3. 접수처 및 갱신대상

가. 당시 보건사회국 보건예방과 마약제 (74-6524)

- (1)마약취급학술연구자 (2)마약도매업자 (3)한외마약제제업자 (4)마약제제업자 (5)마약소분업자 (6)마약수입업자

나. 업소 소재지 관할보건소

(1)마약취급의료업자 (2)마약취급판매자

4. 기 타 사 항

갱신기간 경과후는 구면허증을 효력이 상실되오니 기간 엄수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것은 당시 마약제 또는 관할보건소 의약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공고제 231 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에정지

지정일부변경공고

- 1. 서울특별시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에정지 계획을 일부 변경코쳐 서울특별시공고 제 212 호 (74.10.15) 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영창동 23-4 번지일대 일부토지에 대하여 환지에정지 지정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6 조 및 동법제 5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서와 같이 일부변경하고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가 변경지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은 공고일로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정지공사미완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환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토지는 공사완료 및 다른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사용수익을 하게 한다.

3. 환지에정지 변경지정서 및 변경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와 양서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첨부: 환지에정지 변경지정서 및 변경도면: 생략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구획정리1과 및 양서출장소시민봉사실에 비치)

1974.11.6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23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 1. 건설부고시제 2493 호 (66.6.21)
- 및서울특별시고시 제 19 호 (74.2.26)

로 고시된 동부간선 도로공사 구간 내도로 법면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11.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성동구 송정동
- 2. 사업의종류및신청: 동부간선도로공사
- 3. 사업규모: L=5,250m, B=30m
-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74.5 ~ 74.12.31
- 6. 사용 및 수용할 토지: 별첨조서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조서

토 지 조 서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서			분할후표서 (수용대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1	송정동				1-102대		45	전농동 493-12	한순길	본지정전용포함
2	"				1-16	"	31	송정동 1-16	조성기	"
3	"				1-97	"	45	송정동 1	강두만	"
4	"				72-3	"	74	군자동 99-8	김영권 김학녀	"
5	"				1-40	"	31	송정동 1-40	강분선	"
6	"				1-41	"	7	송정동 1-41	서태진	"
7	"				4-2	"	17	송정동 4-2	한수동	"
8	"				1-93	"	54		이보환 외 1인	"
9	"				5-1	"	10	송정동 5-1	한수복	"
10	"				1-24	"	8		이왕진 장진판	"
11	군자동				125-198	"	30	신당동 251-82	홍병희	"

○ 서울특별시공고제 236 호

미수검증기등록취소공고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증기로서
소정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증기
에 대하여 증기관리법 제 5조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증기등록 취소하였기 공고합니다.

1974.11.11

서울특별시장

1. 등록 취소일 : 1974. 11. 11

2. 등록 취소 증기 번호

107	110	112	134	157	159	171	192
204	233	272	305	310	311	312	317
347	369	382	385	454	523	537	566
568	570	571	573	574	575	576	578
579	582	585	590	591	599	654	722
730	869	871	878	937	948	974	1098
1114	1134	1147	1167	1170	1185	1187	1190
1210	1227	1240	1259	1276	1277	1286	1292
1294	1300	1302	1309	1337	1495	1660	1665
1678	1719	1817	1818	1851	2123	2465	6998
2536	2700	2825	2826	2899	2990	3122	3318
3383	3885	3923	3938	3941	4084	4085	4085
4154	4157	4165	4212	4441	4535	4558	4590
4591	4592	4601	4507	4701	4757	4805	4867
4921	4928	5022	5036	5051	5073	5313	5343
5407	5408	5409	5702	7031	5043	6052	6071
6086	6144	6173	6208	6297	6324	6325	6342
6360	6396	953	1121	1852	2701	4349	

(이상 143 대)

◎ 서울특별시 공고제 23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제 186 호(62.12.20)로 고시된 계동-원서동간도로확장공사 구간내에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11.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시행의 위치: 종로구 계동, 원서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계동-원서동간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도시계획도로
4. B = 8.0 L = 200
4.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 조서
6.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74.11.1 ~ 74.12.30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조서

토 지 조 서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1	계 동	1	대	4031	1	대	4077	학교법인 중앙학원	염양규
2	"	2-34	대	15	1-3	대	4	"	
					2-34	대	1	2-106	
					2-175	대	14		
3	"	3-2	대	70.1	3-2,	대	66.4	3-2	이수순

순 위	소재지	분할전포지			분할후포지 (수용대상)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4	계동	3-1	대	3.9	3-4	대	3.7	동계문구삼철동 137-127	황필수
5	"	2-35	"	13	2-35	"	2.1	낙원동 260	조만수
					2-176	"	10.9		
6	"	2-24	"	20	2-24	"	5.9	" 2-24	이병철
					2-174	"	14.1		
7	"	2-130	"	14	2-130	"	7.3	" 100-1	김옥주
					2-132	"	6.7		
8	"	2-23	"	16	2-23	"	5	" 2-23	김순덕
					2-173	"	11		
9	"	2-129	"	4	2-129	"	2.8	봉익동 122	한창하
					2-181	"	1.2		
10	"	2-128	"	4	2-128	"	2.9	국	
					2-180	"	1.1		
11	"	2-127	"	18	2-127	"	5.6	2-127	유태석
					2-179	"	12.4		
12	"	2-124	"	4	2-124	"	3.7	상도동 36-305	나숙자
					2-178	"	0.3		
13	"	2-21	"	15	2-21	"	15	일본 18 은행	
14	"	2-122	"	21.0	2-122	"	18.5	2-36	안한모
					2-177	"	2.5		
15	"	2-133	"	9.0	2-133	"	4.7	원서동 4-50	한순근
					2-183	"	4.3		
16	원서동	4-50	"	11.0	4-50	"	6.0	4-50	윤용열

4-57 " 5.0

순 번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주용대상)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17	원서동	4-13	대	2.0	4-13	대	1.0	원서동 4 - 50	윤응열
					4-62	"	6.0		
18	"	4-51	"	12	4-51	"	4.7	" 4-13	권익성
					4-68	"	7.3		
19	"	4-14	"	21	4-14	"	7.9	" 4-14	김덕성
					4-63	"	13.1		
20	"	4-15	"	25	4-15	"	9.3	" 4-15	김용균
					4-64	"	15.7		
21	"	4-16	"	33	4-16	"	9.7	" 4-16	박찬겸
					4-65	"	23.3		
22	"	4-17	"	31	4-17	"	29.2	" 4-38	정환정
					4-66	"	1.8		
23	"	8-4	"	36	8-4	"	35.2	" 8-4	김길환
					8-12	"	10.8		
24	"	8-6	"	30	8-6	"	29.5	낙원동 59-5	이동노
					8-13	"	10.5		
25	"	8-10	"	68.9	8-10	"	62.5	장사동 93	이내현
					8-14	"	6.4		
26	"	8-2	"	81.1	8-2	"	76.3	" 93	이내현
					8-11	"	4.8		
27	"	18	"	46	18-1	"	45	와룡동 83	원정숙
					18-2	"	1		
28	"	19	"	21	19-1	"	19.1	" 83	원정숙
					19-2	"	1.9		
29	"	75-1	"	11	75-1	"	6.5	" 75	김만춘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30	원서동	75	대	37	75-3	대	4.5	와룡동 75	김만순
					75	"	30.5		
31	"	3-8	도	1.3	75-2	"	6.5		이왕직장관
32	"	76-2	대	32	76-2	"	2.3		"
					76-61	"	29.7	영등포구 신길동 142-61	황중희
33	"	76-3	대	16.7	76-3	"	7.7	이왕직 장관	
					76-53	"	9	76-53	박원실
34	"	76-4	대	100	76-4	"	17.8	이왕직장관	
					76-54	"	82.2	"	
35	"	76-5	대	37.3	76-5	"	9.2	"	
					76-55	"	29.1	"	
36	"	76-19	대	32.4	76-19	"	13.5	"	
					76-56	"	19.8	76-56	김만순
37	"	76-21	대	21.7	76-21	"	15.5	이왕직장관	
					76-57	"	6.2	76-57	김형술
38	"	76-22	대	18	76-22	"	11.4		이왕직장관
					76-58	"	6.5	가회동 1-70	이영희
39	"	76-23	대	3.3	76-23	"	16.1		이왕직장관
					76-59	"	16.9	76-59	김석찬
40	"	76-24	대	13	76-24	"	4.7		이왕직장관
					76-60	"	3.3		"
41	"	76	대	1,565	76-1	"	8.3		

○ 서울특별시공고제 238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186 호 (62.12.20)

로 고시된 동대문구 창신동지내 진입 도로확장공사구간내에 고시된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제 25조및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다.

2. 관세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11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시행의 위치 : 동대문구 창신동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창신 2동
진입로 확장 공사
3. 사업의 규모 : L=210 B= 8
4. 사업의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확수 및 준공예정 :
1974. . .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 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관계
인의 주소 성명 : 별첨조서

토 지 조 서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 유 자	
		지 번	면적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	동대문구 창신동	690-1	대	20.1	690-3	대	3.0	마포구용강동 40-2	윤봉희
2	"	687-26	"	56.0	687-42	"	2.5	창신동 687-26	이상원
3	"	687-25	"	32.0	687-41	"	3.9	" 687-25	천성원
4	"	572-1	"	34.3	572-3	"	4.6	" 56-53	김순배
5	"	687-4	"	4.4	687-40	"	10.8	" 687-4	이충원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6	창신동	687-1	대	32	687-39	대	10.1	창신동 687-1	김중부
7	"	573-1	"	36	573-2	"	0.9	" 573	김상익
8	"	651-48	"	82.1	651-101	"	18.0	" 651-48	고창균
9	"	651-47	"	42.9	651-100	"	6.3	" 651-47	신성복
10	"	651-46	"	42.3	651-99	"	5.8	" 651-46	박 일
11	"	651-45	"	40.3	651-98	"	4.6	" 651-45	장영길
12	"	651-44	"	28.2	651-97	"	4.3	" 651-44	김두택
13	"	651-43	"	24.2	651-96	"	3.1	" 651-43	안순근
14	"	651-42	"	23.2	651-95	"	3.2	" 651-42	차근영
15	"	651-41	"	25.2	651-94	"	3.1	" 651-41	나원천
16	"	651-26	"	42	651-93	"	4.2	" 651-26	홍성유
17	"	651-21	"	39	651-92	"	3.5	" 651-21	장명구
18	"	651-19	"	30	651-91	"	2.9	" 651-19	서석만
19	"	651-14	"	28	651-90	"	2.9	" 651-14	최낙배
20	"	651-12	"	19	651-89	"	6.7	" 651-1	윤학천
21	"	651-1	"	15	651-88	"	1.2	" 651-1	.
22	"	583-26	"	13	583-133	"	3.1	" 595-36	실복성
23	"	583-25	"	44	583-132	"	6.9	" 583-16	김대기
24	"	583-11	"	30	583-141	"	6.8	" 583-11	현산옥
25	"	583-83	"	44.5	583-140	"	8.8	" 583-83	정관용
26	"	584	"	29.1	584-2	"	7.9	" 584	안임순
27	"	585-2	"	20.2	585-4	"	5.3	동두천읍생면리 40	김기섭
28	"	588	"	22.6	588-2	"	5.8	창신동 683-7	박진환
29	"	585	"	24	586-2	"	7.9	" 586	윤보영
30	"	539	"	11.2	589-2	"	3.1	현저동 7-387	이정순
31	"	570	"	15.3	590-2	"	5.4	창신동 596-1	윤주보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32	창신동	591	대	30.0	591-2	대	5.2	신당동 373-64	조성식
33	"	583-52	"	25.7	583-139	"	3.2	중로 6 가 49	송근배
34	"	592-8	"	35.4	592-11	"	2.4	" 592-8	이용관
35	"	592-7	"	32.7	592-10	"	2.4	" 592-7	강찬경
36	"	646-1	"	47.6	646-12	"	1.9	" 646-1	박명덕
37	"	646-7	"	0.5	646-7	"	0.3	" 447-12	진사준
38	"	646-5	"	42.0	646-10	"	0.4	" 447-12	진사준
39	"	646-6	"	71.9	646-9	"	6.7	" 646-6	김한근
40	"	645-3	"	21.7	645-11	"	4.3	" 645-3	주종룡
41	"	645-2	"	23.1	645-10	"	2.6	" 583-101	이봉우
42	"	645-1	"	16.6	645-9	"	1.8	" 645-1	김정권
43	"	583-101	"	16.1	583-138	"	6.7	" 583-99	외부실권
44	"	583-99	"	25.0	583-137	"	5.7	" 583-99	"
45	"	583-98	"	22.6	583-136	"	4.3	" 583-98	오순근
46	"	583-97	"	10.1	583-135	"	2.7	" 583-97	이종영
47	"	583-29	"	36.3	583-134	"	4.1	" 583-29	최갑성
48	"	583-28	"	14.4	583-131	"	3.2	" 583-29	"
49	"	583-1	"	5.0	583-130	"	2.8	" 583-1	전석용
50	"	633-4	"	50	633-34	"	0.9	" 633-4	홍길상
51	"	633-8	"	21	633-35	"	1.2	낙원동 233	김명숙
52	"	633-1	"	12	633-36	"	4.2	화곡동 98-207	이경원
53	"	595-50	"	41.2	595-50	"	38.4	창신동 645-5	박명덕
54	"	130-114	"	18	130-143	"	7.7	" 595	금강채석
55	"	596-5	"	4	596-11	"	0.4	" 595	서울시
56	"	595-1	"	545.7	596-10	"	5.7	" 596-1	주명남
57	"	629-17	"	16	629-96	"	0.8	" 629-17	한석근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수용대장)			소 유 자	
		지 번	지 역	지 적	지 번	지 역	지 적	주 소	성 명
58	동대문구 창신동	629-3	대	14	629-97	대	0.6	화곡동 629-3	김정배
59	"	627-3	"	14.1	627-202	"	2.3	" 527-3	박우석
60	"	627-2	"	14	627-201	"	3.9	부산시중구부평동 15	이윤순
61	"	627-1	"	20.1	627-200	"	4.1	" 627-1	최석환
62	"	600-28	"	23	600-61	"	0.7	" 600-28	김병수
63	"	605-1	"	66	605-2	"	5.3	" 605	이덕호
64	"	626-1	"	7.6	626-5	"	1.1	" 626-3	조성구
65	"	625-5	"	27	625-16	"	10.4	" 625-5	박근호
66	"	625-4	"	20.0	625-15	"	2.3	" 625-4	여일구
67	"	621-3	"	8.8	621-5	"	3.0	" 621-3	이육자
68	"	621-1	"	23.2	621-4	"	1.0	" 621-1	남광우
69	"	611-20	"	5.7	611-20	"	3.3	서소문동 62	이우진

예 규

서울특별시 수사페이징 시스템 운영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974. . . .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예규 제 282 호

서울특별시 수사페이징
시스템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각종 긴급

상황을 형사 피의인에게 직접 정확
히 지령함으로써 수사활동의 효율성
을 도모하여 주요사건등에 대한 수
색망의 형성 및 범인의 조기 검거
에 완벽한 기하기 위하여 수사페이
징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령실등) ①서울특별시경찰국
(이하 "경찰국"이라 한다) 통신과
무선 지령실에 수사지령실(이하

“지령실”이라한다)을 두고 지령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기를 비치한다.

- 1. 메모드 콘트롤 SW 531 B형 1대
- 2. 엔호타 SL 251 S100 LLBS 1대
- 3. 인터폰 1대

②남산중계소에는 배이스L 43 1대 메모드 콘트롤 SW 531 A형 1대를 비치하고 경찰국 형사과장실, 강력계장실, 도법계장실에는 인터폰 1대를 각각 비치한다.

제3조(수신기록실) 각경찰서 상황실에 수신기록실을 두고 상황실장이 이를 관장하며 수사과장이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제4조(수신기 휴대자) ①페이징 수신기(이하 “수신기”라 한다)는 외근형사 개인에 대여하여 상용 휴대하게 한다.

②전항의 수신기 휴대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수신수첩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 ①지령실 근무요원은 경찰국 형사과 소속직원으로 하고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제1기동대 근무기간으로 본다.

②지령실 근무는 근무요원 4인이 2인씩 격일제로 한다.

③각 경찰서의 수신기록 요원은 각 경찰서 상황실 근무자가 겸임한다.

제6조(지령의 종류) 지령실에서 발하는 지령은 긴급지령과 일반지령으로 나누고, 그 발령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지령

가. 총기, 폭발물 기타 용기등을 소지한 범위가 발생한다.

나. 살인, 강도, 방화사건이 발생한다.

다. 기동성범죄(차량이용등)가 발생한다.

라. 중요폭력(정치인, 언론인 및 외국인에 대한)사건이 발생한다.

마.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한 다액 절도 사건이 발생한다.

바. 범법 도주차량이 발생한다.

사.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 또는 경찰국장 또는 경찰서장이 긴급 공조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이 발생한 때.

2. 일반지령

가. 전호 이외의 사건이 발생한다.

나. 수사요원이 알아야 할 사항을 공지할 때

제7조(호출구분) ①지령을 발하기 위한 호출은 톤(Tone)의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 1. 일 제지령 : 전체 그룹의 수신기를 동시에 호출한다.
- 2. 그룹지령 : 경찰국형사과 및 각 경찰서 단위의 수신기만을 호출한다.
- 3. 개별지령 : 수신기 휴대자를 특정하여 호출한다.

②전항의 호출구분은 경찰국 형사과장 또는 속직과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8 조 (지령요령) ①지령은 지령실 근무요원이 별지 제3 호 서식에 의한 지령 의뢰서에 의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경위급 이상의 간부가 직접 지령할 수 있다.

②지령을 지령실에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5 호 서식에 의한 지령 의뢰서를 지령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나 통신문에 의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지령은 가능한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무선 음어 및

약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음어가 없으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지령의뢰서는 경찰국 형사과장 또는 속직과장의 결재를 받아 지령실에 보관한다.

제9 조 (기기의관리) ①지령실 및 남산중재소에 부설된 기기에 대하여는 경찰국 통신과장이 책임 받는다.

②수신기 상용 휴대자가 수신기를 손실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③수신기의 충전은 상용 휴대자가 매일 8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09:00 - 24:00 에는 충전할 수 없다.

④충전기는 사무실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형사활동의 편의상 자택에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 조 (감독) 시스템 운영의 총지휘 감독은 경찰국장이 하며 경찰국 각과장 및 경찰서장은 다음의 사항을 분임하여 지휘 감독한다.

<p>1. 통신과장</p> <p>가. 지령실의 기기관리</p> <p>나. 지령실 요원의 근무상황</p> <p>2. 형사과장</p> <p>가. 지령을 위한 내용 및 범위의 사전 판단</p> <p>나. 지령요원의 지휘 감독</p> <p>다. 경찰관 점검규칙에 의한 수신기의 통상점검</p> <p>3. 경찰서장</p> <p>가. 수신 기록실 운영에 대한 감독</p> <p>나. 경찰관 점검규칙에 의한 수신기의 통상 점검</p> <p>4. 형사과 각계장 및 경찰서 수사과장</p> <p>가. 소속직원의 수신기 관리상황</p> <p>나. 수신 수첩일일 점검에 의한 형사 개개인의 활동상황 감독</p> <p>제11조(비치서류) ①지령실 및 수신기록실에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p> <p>1. 지령실</p> <p>가.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p>	<p>나. 지령의뢰서 접수부(별지 제2호 서식)</p> <p>다. 지령의뢰서</p> <p>(별지 제3호 서식)</p> <p>라. 긴급지령부</p> <p>(별지 제4호 서식)</p> <p>마. 일반지령부</p> <p>(별지 제5호 서식)</p> <p>2. 수신기록실</p> <p>가. 근무일지</p> <p>(별지 제6호 서식)</p> <p>나. 지령접수부</p> <p>(별지 제7호 서식)</p> <p>다. 긴급지령수신부</p> <p>(별지 제8호 서식)</p> <p>라. 일반지령수신부</p> <p>(별지 제9호 서식)</p> <p>부 칙</p> <p>이 요령은 197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

(별지 제 호서식)		(전면)			
근 무 일 지		전 재	반 장	계 장	과 장
1974.		요일 :	날짜 :		
근 무 자	주 간		야 간		
처 리 상 황	접수건수	건	접수건수	건	
	일제지령건수	건	일제지령건수	건	
	긴급지령건수	건	긴급지령건수	건	
	일반지령건수	건	일반지령건수	건	
	중 계 건 수	건	중 계 건 수	건	
복 수 상 황					

과 과 서 별 의 회 건 수 내 역 표

(1 호)

구분 서 별	의 회 건 수				결 결 상 상 황 황	비 비 고 고
	긴 급	일 일 반 반	중 중 계 계	제 제		
형 사 1 계						
형 사 2 계						
형 사 3 계						
중 부						
중 토						
남 대 문						
서 대 문						
등 대 문						
용 산						
성 북						
청 랑 리						
마 포						
영 동 포						
성 동						
노 량 진						
동 부						
서 부						
북 부						
남 부						
태 능						
기 타						
계						

일 제 지 령 의 퇴 서 접수 부

(별 지 세 2 호 서 식)

접 수 번 호	접 월 시	수 일 분	지 령 종 별	계 목 (내용)	해 당 순 서	지 령 시	령 일 분	지 령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65-52 제 466 호

시 보

1974. 11. 11

(별지 제 3 호 서식)

지 명 의 퇴 서

197 년 월 일

반 장	계 장	과 장

지 명 종 별	지 명	접 수 일 시 분	지 명 일 시 분
---------	-----	-----------	-----------

제 목

지 명 요 지

지명의퇴자 과 장 인

지 명 자 계 급 성명 인

(별지 제 4 호서식)

진급지령부		결 재	반장	제장	과장
197					
접수시분	지령시분	진급지령내용	해당관서	비고	

(별지 제 5 호서식)

일 반 지 령 부 197 :	결	관 장	계 장	과 장
	재			

접수시분	지령시분	일 반 지 령 내 용	해당관서	비 고

(별지 제 6 호서식)							
근 무 일 지			결	반 장	계 장	과 장	서 장
			제				
1974.			요일		날씨		
근 무 자	주 간			야 간			
처 리 상 황	접수건수		접수건수				
	일제제명승선건수	건	일제지명건수	건			
	긴급지명	건	긴급지명	건			
	일반지명	건	일반지명	건			
황	의퇴건수	건	의퇴건수	건			
특 기 사 실							

(별지 제 7 호 서식)

일 제 지 명 수 신 접 수 부

적 수 번호	접 수 일 시	지 명 번호	지 명 종 별	계	목	지 명 일 분	수 신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별지 제 B 호 서식)

수 신 부 (긴급 지명) (일반 지명)	결 재	반 장	계 장	과 장	서 장
197					

지 명 시 분	지 명 번 호	긴 급 지 명 내 용	발 신 자	수 신 자	비 고

(별지 제 9 호 서식)

수신부 (일반지령)		결재	반장	계장	과장	서장
197						
지령 시분	지령 번호	일반지령내용		발신자	수신자	비고

(별지 제 10 호서식)

형 사 수 신 수 첩

지령번호	지령일시시분	지령종별	지령자	비고
조치 및 처리사항				

사 령

◎1974.11.1

자 동 차 지방행정 이 삼 봉
운수사업소 주 사
관계과 근무를 명함.
자 동 차 지방행정 최 두 식
운수사업소 주 사
연료과 근무를 명함.
자 동 차 지방행정 최 성 국
운수사업소 주 사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자 동 차 지방행정 이 동 만
운수사업소 주 사
도봉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자 동 차 지방행정 서 제 학
운수사업소 주 사
관악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자 동 차 지방행정 김 타 용
운수사업소 서 기
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자 동 차 지방행정 이 영 수
운수사업소 서 기
서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1974.11.5

운수 2과 지방행정 서 승 원
운수 3계장 사 무관
운수 2과운수 1계장에 보함.
운수 1과 지방행정 이 제 춘
지도계장 사 무관
운수 3과지도 1계장에 보함.
자 동 차 지방행정 추 교 남
운수사업소장 사 무관

운수 3과지도 2계장에 보함.
운수 3과 지방행정 허 돈
관리계장 사 무관
운수 3과안전계장에 보함.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윤 순 화
교수부 사 무관
행정과 행정관리계장에 보함.
영동출장소 지방행정 조 낙 희
산업과장 사 무관
청소 1과 장비계장에 보함.
자동취침비창장 지방행정 임 낙 규
관리과장 사 무관
중로구 근무를 명함.
운수 2과 지방행정 이 중 건
운수 1계장 사 무관
성동구 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지방행정 윤 철
산업과장 사 무관
성동구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최 영 태
교수부 사 무관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운수 3과 지방행정 윤 두 영
안전계장 사 무관
관악구 근무를 명함.
동원담당관실 지방행정 이 강 훈
동원 1계장 사 무관
마포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 허 윤 철
사화과장 사 무관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마포보건소 지방행정 강 천 희
민원봉사실장 사 무관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지방행정 정 태 진
위생과장 사 무관

중구보건소 위생과장에 포함.		연로과 연로지도반장에 포함.	
마포구보건소 지방행정 위생과장 사무관	최길수	인사과 지방행정 전형제장 사무관	윤 작
동대문구 위생과장에 포함.		인사과 인사제도제장에 포함.	
관악구 지방행정 총무과장 사무관	최주열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정재택
성동구보건소 위생과장에 포함.		통계과 통계조사제장 직무대리물	
서대문구 지방행정 사회과장 사무관	신용섭	명함.	
마포구보건소 민원봉사실장에 포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김영두
용산구보건소 지방행정 민원봉사실장 사무관	이규신	성북구 근무물	명함.
마포구보건소 위생과장에 포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고명도
중구보건소 지방행정 위생과장 사무관	이민수	서대문구 근무물	명함.
용산보건소 민원봉사실장에 포함.		문화공보실 지방건축보	서장범
마포구 지방행정 청소과장 사무관	임병택	부직을 명함.	
공무원교육원교학과 전형제장직무대리물 명함.		4호봉을 남함.	
통계과 지방행정 통계조사제장 사무관	김창신	동대문구 근무물	명함.
공무원교육원교수부 근무물 명함.		구회정리2과 지방토목 기원보시보	양명덕
행정과 지방행정 행정관리제장 사무관	박화수	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공무원교육원교수부 근무물 명함.		1호봉을 남함.	
청소1과 지방행정 장비제장 사무관	박종욱	구회정리2과 근무물 명함.	
공무원교육원교수부 근무물 명함.		구회정리2과 지방토목 기원보시보	한형득
성북구 지방행정 시민봉사실장 사무관	이영제	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공무원교육원교수부 근무물 명함.		1호봉을 남함.	
성동구 지방행정 산업과장 사무관	김의석	구회정리2과 근무물 명함.	
연로과 연로지도반장에 포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주택과장 사무관	김일환		

◎1974.11. 6

새마을지도과 지방행정사 김주환
지방공무원법제 65조의 2 제 1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1974.11. 8

서대문구보건지방의무과 이 중 범
소장직무대리 직무대리를 명함.
종로구보건소장 지방의무정 주 수 태
총로구보건소장 지방의무정 주 수 태
중구보건소 소장에 포함.
영등포구보건지방의무정 정 두 영
보건소소장 지방의무정 정 두 영
성동구보건소소장에 포함.
성동구보건소 지방의무과 김 병 희
천호지소장 지방의무과 김 병 희
서대문구보건소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지방의무정 박 인 섭
소장 지방의무정 박 인 섭
관악구보건소 소장에 포함.
중구보건소 지방의무정 허 완
소 지방의무정 허 완
영등포구보건소 소장에 포함.
관악구보건소 지방의무과 심 락 진
소장직무대리 지방의무과 심 락 진
성동구보건소 천호지소장에 포함.
위생연구소 지방보건관 김 효 상
연구관 지방보건관 김 효 상
지방공무원법제 65조의 2 제 1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1974.11. 9

서건설사업소 부 지방행정사 박 종 서
주 지방행정사 박 종 서
기획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한건설사업소 감 지방행정정보 신 정 성
주 지방행정정보 신 정 성
예산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공업과 지방행정정보 박 종 호
주 지방행정정보 박 종 호
예산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보 장 광 진
사무과 주사보 장 광 진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법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법무담당관실 지방행정정보 라 봉 운
주 지방행정정보 라 봉 운
인사과 근무를 명함.
중 구 지방행정사 김 성 태
주 지방행정사 김 성 태
새마을지도과 근무를 명함.
공업과 지방행정정보 김 진 규
주 지방행정정보 김 진 규
새마을지도과 근무를 명함.
총 무 과 지방행정정보 장 옥 수
주 지방행정정보 장 옥 수
회계과 근무를 명함.
관 악 구 지방행정사 이 강 명
주 지방행정사 이 강 명
새마을지도과 근무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지방행정사 안 병 조
주 지방행정사 안 병 조
연료과 파견근무를 명함.

양 묘 장 지방행정 주	장 영 석	성복구(천호 지방토목 출장소파견중) 기사보	이철현
용산구보건소 파견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파견근무를	해제함.
종 로 구 지방행정 주	이 원 점	토목시험소 지방토목 기	전희봉
양묘장 파견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총 지방행정 무과파견중) 서기보시보	홍 광 표	보건행정과 지방수의사	최원식
총무과 파견근무를 명함.		가축위생시험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수도 지방행정 사업소(공) 주	신 상 욱	동대문구 지방의무 기 보 건 소	이인식
공업과 근무를 명함.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공업과파견중)	변 영 일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 1974.11.10	
4호봉을 급함.		성 복 구 지방행정 김 정 상 수도사업소 서 기	
공업과 근무를 명함.		취커스웬스 FY 75 훈련요원으로	
운수 1 과 지방행정 주	이 흥 열	방호담당전신 이진근무를 명함.	
운수 3 과 근무를 명함.		(74.11.10-74.12.31 까지)	
운수 1 과 지방행정 주 사 보	이 만 용		
운수 3 과 근무를 명함.		◎ 1974.11.11	
운수 2 과 지방행정 주	안 은 현	공 업 과 지방전기 기 사	김 교 복
운수 3 과 근무를 명함.		지방전기기좌에 임함.	
방역사무소 지방보건 기 사	김 현 동	2호봉을 급함.	
영등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공업과 기전제장에 포함.	
동대문구 지방토목 기사보	김 흥 식	중 기 관 리 지방기지 사 업 소 기 사	박 덕 용
도봉구 근무를 명함.		지방기제기좌에 임함.	
지하철본부(서 지방토목 대문구파견중) 기사보	박 연 규	2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대현산비수지사사무소 소장에 포함.	

운동장(공업 과파견근무)	지방전기 사	김영용	환경과 근무를 명함.	
기전과(공업 과파견근무)	지방전기 사	김성길		강예숙
기전과(공업 과파견근무)	지방전기 사	송용찬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도시가스사업소 (공업과파견근무)	지방기계 사보	이원홍	1호봉을 급함.	
도시가스사업소 (공업과파견근무)	지방화공 기사보	조성학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환경과(공업 과파견근무)	지방화공 기사보	김종구		유숙선
토목시험소(공 업과파견근무)	지방화공 기사	홍정선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공업과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토목과(운동 장파견근무)	지방전기 사	안심식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운동장 근무를 명함.				변경희
자동차정비창	지방기계 사	강용규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환경과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자동차정비창	지방기계 사보	홍대기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이명희
자동차정비창	지방기계 원	유인상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자동차정비창	지방기계 원	이명수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김혜란
자동차정비창	지방기계 원	김희완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연료시험소	지방화공 기사보	노종식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동포병원 근무를 명함.</p>	<p>유 영 희 용 산 구 지방기재 김 창 석 기 원 보 기 원 보 자동차정비창 근무를 명함.</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동포병원 근무를 명함.</p>	<p>고 우 자 지하철본부 지방토목 황 속 제 (공무과장) 기 정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중구보건소 지방보건 노 제 영 기 사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호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최 인 영 파면에 처함.</p>
<p>농 정 과 지 수의사보 윤 여 황 연료과 파견근무를 명함.</p>	<p>© 1974. 11. 13 시 대 문 구 지방건축 장 기 찬 (건축과장) 기 과 건축과 미관계장에 포함. 건 축 과 지방건축 윤 태 응 (미관계장) 기 과</p>
<p>농 정 과 지방농림원 문 현 식 연료과 파견근무를 해제함.</p>	<p>시 대 문 구 근무를 명함. 도 시 제 회 국 건축기정 심 두 한 건축과(과장)</p>
<p>중 구 기 계 기 원 신 경 호 용산구 근무를 명함.</p>	<p>국 가 공 무 원 법 제 37 조 의 2 제 1 항 제 2 호 의 규 정 에 의 하 여 그 직 위 를 해 제 함.</p>
<p>서 을 특 별 시 장</p>	